

		<p>예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</p> <p>8.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. 다만,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(모집)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.</p> <p>9.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. 다만,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(모집)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.</p> <p>8.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이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고시하는 사항</p> <p>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</p> <p>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교부하는 경우 경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교부하여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 전자우편에 의하여 으로 갈등할 수 있으며, 교부할 수 있다.</p> <p>10.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이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</p> <p>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</p> <p>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교부하는 경우 경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교부하여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 전자우편에 의하여 으로 갈등할 수 있으며, 교부할 수 있다.</p>	<p>같다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운용보수율: 연 1,000분의 3.3 1. 운용보수율: 연 1,000분의 3.4</p> <p>2. 지정참가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1.0 2. 지정참가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5</p> <p>3. 신탁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 3. 신탁보수율: 연 1,000분의 0.2</p> <p>4. 일반사무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 4. 일반사무보수율: 연 1,000분의 0.4</p> <p>⑤ 생 략 ⑤ 생 략</p> <p>제41 조 (투자자금) ① ~ ③ 생 략 ① ~ ③ 생 략 ④ 집합투자업자가 ④ 집합투자업자가 이익분배금에 이익분배금에 자신이 달하는 경우에는 분배되며 이익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소득세법 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항제3호에 의하여 집합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을 보할 수 있으며, 이익금이 “零”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1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1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p>
2010.11.01 (운용제한)	36조	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해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만, 법령 및 규정에서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.</p> <p>1. ~ 3. 생 략 1. ~ 3. 생 략</p> <p>4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행위</p> <p>투자하는 행위</p> <p>5. ~ 6. 생 략 5. ~ 6. 생 략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해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만, 법령 및 규정에서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.</p> <p>1. ~ 3. 생 략 1. ~ 3. 생 략</p> <p>4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행위</p> <p>투자하는 행위</p> <p>5. ~ 6. 생 략 5. ~ 6. 생 략</p>
제38조 (투자자신탁보수수)		<p>① ~ ③ 생 략 ① ~ ③ 생 략</p> <p>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평균 잔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한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</p>	<p>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평균 잔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한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</p>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 · 해임에 관한 사항

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	변경전				변경후			
				변경일	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			
안전회계법인	1년	165 만원	서면계약	-	-	-	-	-	-	-	-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 - 부합함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- 적정함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 - 공정함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- 적정함

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